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, 부시장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지표 달성도, 행정수요의 지속성, 기능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·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(안 제3조의2).

나. 부시장 업무배분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(1)부시장, 행정(2)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함(안 제4조).

1) 행정(1)부시장은 경제정책실·복지정책실·도시교통실·문화본부·기후환경본부·행정국·재무국·평생교육국·관광체육국·시민건강국의 소관 사무와 다른 부시장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분장함.

2) 행정(2)부시장은 안전총괄실·도시재생실·도시계획국·주택건축본부·푸른도시국·물순환안전국·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함.

3)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언론·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, 국회·시의회 협조,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, 제112조

(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3조

(3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#### 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9. 29.~10. 5.)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·본부·국(이하 “자율신설기구”라 한다)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(이하 이 조에서는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는 성과지표 달성도, 행정수요 지속성,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.

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,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·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4조)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부시장) ①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

(1)부시장, 행정(2)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둔다.

② 행정(1)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1. 경제정책실·복지정책실·도시교통실·문화본부·기후환경본부·행정국·재무국·평생교육국·관광체육국·시민건강국의 소관 사무

2. 다른 부시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

③ 행정(2)부시장은 안전총괄실·도시재생실·도시계획국·주택건축본부·푸른도시국·물순환안전국·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언론·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, 국회·시의회 협조,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의2(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·본부·국(이하 “자율신설기구”라 한다)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평가(이하 이 조에서는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는 성과지표 달성도, 행정수요 지속성,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,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·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4조(부시장) ①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(1)부시장, 행정(2)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행정(1)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</p> <p><u>1. 경제정책실·복지정책실·도시교통실·문화본부·기후환경본부·행정국·재무국·평생교육국·관광체육국·시민건강국의 소관 사무</u></p> <p><u>2. 다른 부시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</u></p> <p><u>③ 행정(2)부시장은 안전총괄실·도시재생실·도시계획국·주택건축본부·푸른도시국·물순환안전국·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</p> <p><u>④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<u>서울특별시장</u>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,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·조정하며, 조직관리·예산·법제·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,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·진압과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u>여 언론·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, 국회·시의회 협조,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제4조의2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와 부시장 사무분장을 규정한 것으로 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## 4. 작성자

조직담당관 김철목(2133-6732)